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의안 번호	564
----------	-----

제출년월일 : '96. 11.

제안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대통령령 제15100호 ('96. 7. 1)호 도로법시행령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150호 ('96. 8. 19)호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이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안산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 심의회구성 : 위원장 — 부시장, 위원 30명이내, 임기 2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2조)
- 심의회기능 : 도로굴착관련 장기·연차계획수립, 도로점용관련 사업계획 및 교통
 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의 유지, 관리등(안 제3조)
- 소심의회의 구성 : 안전대책소심의회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심의조정,
 중복굴착소심의회 - 도로의 중복굴착방지 및 사업시기 실의·
 조정(안 제4조)
- 소심의회의 임무 :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관련 시설유지, 관리 및
 사업시행시기조정 장기계획, 연차계획등 심의·조정
(안 제5조)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및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내지 제24조의 1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총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 ·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소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에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 · 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 · 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둔다.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분야

제5조 (소심의회의 임무) ①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의·조정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제6조 (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시행령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 기술분야 책임자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심의회별로 위원을 배정하되, 각 분야별 안전대책 소심의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청(또는 도로점용허가기관)의 직원
2.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중복굴착소심의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청(또는 도로점용허가기관)의 직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군부대 포함)의 직원

제7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중복글작소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글작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글작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다만,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글작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글작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해당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기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무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제10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안건의 송부) 심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 처분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③ (폐지조례) 안산시도로글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64

제출년월일 : 1996. 12. 24.

제출자 : 도시·건설 위원장
홍장표 위원회 10인

1. 수정이유

-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조정결과가 각 의원들에게 전파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 조정결과 통보 대상 범위를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제8조중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를 "심의 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안산시의회 의장,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로 수정함.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 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안산시의회 의장,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